사업관련성 사용용도 세무처리(관련법령) 사업관련성\* 이 있는 경우 차량유류대 손금인정(법법§19) 종업원 복리후생 손금인정(법법§19) 상품, 제품, 원･부자재 구입 손금인정(법법§19) 종업원 급여성 경비 손금인정(법법§19) 접대성 경비 일정한도 내에서 손금인정 (법법§25, 조특법§136) 사업관련성이 없는 경우 국가, 공익성 단체등에 기부 (법정･지정기부금 등) 일정한도 내에서 손금인정 (법법§24) 기타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비지정기부금 등) 손금불인정(법법§27)